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0822 압류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5. 무궁교회에 환급될 등록세 등의 과오납금 200,838,970원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가. [redacted]구청장은 2013. 8. 13. 원고에게, 원고가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대 1,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가 [redacted]구청장을 상대로 위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자(서울고등법원 2014누56736호 사건), 동대문구청장은 2015. 1. 13.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5. 1. 14.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427,855,430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2. 5. 체납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redacted]구청장, 체납세액을 200,838,97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속 [redacted]교회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환급금은 [redacted]교회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을 압류하여 원고 소속 [redacted]교회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처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는 지방세이므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판결 참조).

그런데 을가 제1, 2, 3, 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0. 3. 18.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4. 30. 관할 관청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정관변경 신청을 하여 허가받았으며, 2010. 5. 3. 등기를 하였고, 2010. 5. 4. 지방세감면 신청을 한 사실, ② 동대문구청장이 2013.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후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③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금 결정결의를 한 사실, ④ 피고는 2015. 3. 30.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원고에게 등기로 발송하였고, 원고 A이 2015. 3. 31. 송달 받은 사실, ⑤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환급금을 원고에 대한 2012년 등록세 미납채권에 충당한 사실, ⑥ 원고는 2015. 2. 11. [redacted]교회에 이 사건 환급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환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이 무궁교회에 귀속된다거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피고가 [redacted]교회에 대한 미납세액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후 이루어진 채권 양도에 의해서 비로소 [redacted]교회에 귀속되었고, 원고의 2012년 등록세 미납채권에 충당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그 환급금에 대한 압류 처분의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나영

판사 윤준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끝.